

복식문화학회 (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)

『복식문화연구 (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)』 논문심사규정

제정일: 1993년 04월 20일

최근 개정일: 2021년 08월 11일

1. 본 규정은 『복식문화연구』지에 투고할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『복식문화연구』지에 투고한 논문은 한 편당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한다.
3. 심사위원 선정기준은 본 학회 정회원 중 복식문화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학자로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일치도, 연구업적, 직급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, 혹은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. 단, 특정분야의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.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4.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1) 논문주제의 독창성 2)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3) 연구방법의 타당성 4) 논문구성과 서술의 논리성 5) 학문적 기여도 6) 참고문헌/ 영문초록 양식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.
5.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', '수정 후 재심사', '게재불가'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.
 - 1) 심사결과 '게재가', '수정 후 게재'로 판정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검토 후 투고자에게 추가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결과를 편집위원이 승인하였을 때 게재절차를 진행한다.
 - 2) 심사결과 '수정 후 재심사'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수정 지시사항에 따라 반드시 수정한 후, 수정된 논문을 「논문 수정 보고서」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의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.
 - 3) 심사결과, 동일 심사차수에서 2인 이상 '게재불가'로 판정한 경우에는 최종 판정 결과를 '게재불가'로 한다. 심사위원 1인의 '게재불가' 판정 시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제3의 심사자가 '게재불가'로 판정하는 경우 최종 판정 결과를 '게재불가'로 한다. '게재불가'로 최종 판정된 논문은 동일 제목과 내용으로 다시 투고할 수 없다.
 - 4) 심사결과 투고논문이 '게재가'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연구윤리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'게재불가'로 처리할 수 있다.
 - 5) 논문의 연구 대상 및 범위가 유사한 논문이 복수로 반복 투고되는 경우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 또는 제3의 유사논문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.
 - 6) 심사가 진행되는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중복게재 및 표절 의혹을 제시한 경우 해당 논문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'게재불가' 통보를 할 수 있다.
 - 7)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지시 후 특별한 이유없이 6개월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6.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되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를 14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심사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.
7. 논문 투고 시부터 게재 전까지의 모든 심사과정은 익명으로 처리하되,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8. 논문 심사 결과 중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.
9. 논문게재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 중 접수순서와 국·영문 논문, 세부 분야, 급행논문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※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 문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